

진흥회게시판

「'96광주 첨단전자전」 참가안내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의 구심체인 본회는 지난 26년간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전시회인 한국전자전(KES)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전자산업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5월에 개최한 부산전자전람회는 국내외 50개사가 참가하고 8만 명이 관람하여 대성황을 이룸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전자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회는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통상산업부와 광주광역시 공동 주최하는 「'96 광주 첨단전자전」을 다음과 같이 신규 개최합니다.

동 전시회는 「'95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광주광역시가 미래 첨단정보도시로 새롭게 부상하기 위해 비엔날레와 동등한 비중을 두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 등 최첨단 제품 전시와 함께 전자기술 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되어 업계관계자는 물론 일반인, 학생 등의 폭넓은 호응이 예상됩니다.

본회는 동 전시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참가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참가비를 통례보다 절반 정도로 대폭 하향하였사오니 부산전자전람회에 이어 또 하나의 지방전시회의 큰 획을 그을 「'96 광주 첨단전자전」에 회원사 및 전자정보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다 음

1. 전시회명 : '96광주 첨단전자전 (KES-Kwangju '96)
2. 전시기간 : 1996. 6. 5(수)~6.10(월), 6일간
3. 전시장소 :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광주시 북구 운암동 164-1, 중의공원내)

4. 전시면적 : 2,000평
5. 전시품목 : 멀티미디어, 전자게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영상기기, 통신제품, 자동차용 전자제품, 계측기, 가정용, 산업용 전자정보제품 및 관련 부품, 소재일체
6. 참가신청 : 1996. 1.15부터 선착순 접수마감
7. 문의처 : 본회 국제부 전시과(Tel.553-8725, 553-0941/7, Fax : 563-7371)

'96년도 자본재산업 육성관련 전략품목 및 일반품목 고시신청 안내

통상산업부 산기 55421-552('95.12.4)에 의거 '96년도 자본재산업 육성관련 전략품목 및 일반품목 고시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목적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의 육성

2. 신청대상 품목

○ 전략품목

- 수입과다품목 : 품목별연간 수입액이 1,000만불 이상의 품목
- 수입대항력강화품목 : 수입선다변화 해제 등을 대비하여 품질, 성능 개선이 필요한 품목
- 수출전략품목 : 국내생산 제품 중 단기간의 육성으로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품목
- 수요확대 예상품목 : 선진국에서 개발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품목

○ 일반품목

- 전략품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액이 1,000만불 이하의 품목
- 국내수요는 크지않으나 기술과급효과가 커 산업에 영향력이 큰 품목

진흥회게시판

- 완제품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품, 소재 및 소프트웨어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최초, 핵심기술이 개발된 품목
- 공용화 대상품목
- 양산품목
 - 기술개발(시제품개발)이 완료되어 양산하려는 품목
- 3. 신청방법 및 분야
 - 신청기간 : 95.12.18(월)~96.1.20(토)
 - 접수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부품산업부 개발지원과
직통553-0601, 553-0941/7(교 : 47)
 - 신청분야
 - 가전제품·전자응용기기
 - 컴퓨터 H/W, S/W
 - 통신기기, 의료기기
 - 전자부품(반도체, 소재)
- 4. 추진일정
 - 95.12~96.1 : 품목발굴
 - 96.3 : 확정품목 고시(전략 및 일반)
 - 96.4~ : 자금지원
- 5. 신청시 주의사항
 - 동일품목을 전략품목 및 일반품목으로 중복신청 배제
 - 1사 1품목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재 국산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선정가능
 - 일반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하여 신청
 - '95년 자금이 지원된 업체는 기지원된 품목이 개발완료된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가능

- 금형제작과 같이 원천적 기술개발이 아닌 단순한 품목선정은 제외
- 6. 문의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개발지원과 운동엽
Tel : 553-0941/6(교 47)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중 개정 안내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2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5년 12월 일
통상산업부장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산정방법) ① 손익계산서상 전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위당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이하 “판관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단일제품 단일규격의 경우에는 전체 판관비를 당해 제품의 판매수량으로 나눈다.
2. 복수제품 또는 복수규격의 경우에는 제품별·규격별로 당해 제품 규격의 내수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이에 전체 판관비를 곱하여 해당제품규격의 판관비를 구한 다음 당해 제품규격의 판매수량으로 나눈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있어 내수부문과 수출 부문에대한 판관비가 손익계산서에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규격의 내수매출액이 내수부문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내수부문 판관비에 곱하여 해당 제품규격의 판관비를 구한 다음 당해제품규격의 판매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진흥회게시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일정 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기술인력의 인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내의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연구보조원은 당해 기업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으로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당해 기업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공업계 또는 공학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나.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기능장 또는 다기능기술자 과정을 졸업한 자
3. 당해 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 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4. 당해 기업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근무하고(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93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자는 제외한다) 당해 기업의 사업주가 추천하는 자로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산하 직업훈련기관장이 현장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확인한 자

제3조(확인방법) ①제2조제1호의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교부하는 인정서에 의한다.

②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제출한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가 확인한다.

③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현장기술인력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직업훈련기관장은 이를 심사후 현장기술인력 확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동 신청서에 확인 날인한다.

제4조(심사방법) ①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기술인력 확인시 대상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현장기술인력으로 확인한다.

1. 고용보험법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소정의 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증명서를 제출한 자
 2. 근로자가 작성하고 사업주가 확인·제출한 직무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생산 및 그 관련직종(단순노무직은 제외)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②각 지방노동관서장은 생산 및 그 관련직 확인을 위하여 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장으로부터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공단 이사장은 생산 및 그 관련 직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소요예산을 확보·지원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문, 월간지 등에 안내 공고 등 종합적

진흥회계시판

인 홍보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세부규정) 공단 이사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6년도 대EU 칼라브라운관
수출자유규제 운영요령 안내

1. 규제품목 : HS 8540.11중 칼라브라운관
2. 규제기간 : '96.1.1~'96.12.31
3. 규제지역 : EU
4. 관장단체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5. 규제물량 : 추후통보('96년도 한·EU업계간 규제물량 합의시까지 '95년도 규제량 수준에서 잠정 운영)

6. 물량배정

가. 기본배정

- 배정물량 : 규제물량의 70%
- 배정방법 : '95년도 대EU 수출실적(물량기준) 점유비에 따라 배정함

나. 개방배정

- 배정물량 : 규제물량의 30%
- 배정방법 : 다음방법에 의한 점유비로 배정함

$$\left[\begin{array}{l} \text{각업체의 '95년중} \\ \text{EU 및 미국 이외지} \\ \text{역 수출금액} \end{array} \right] \times \left[\begin{array}{l} 1+\text{EU 및 미국 이외} \\ \text{지역 수출금액을 기준} \\ \text{으로 전년대비 '95년} \\ \text{의 해당업체 수출신장} \\ \text{율에서 평균수출 신장} \\ \text{율을 차감한 율의 } 1/ \\ 2 \end{array} \right]$$

다. 물량배정시 규격별 카테고리 구분배정하며, 대일 수출실적은 해당 실적의 200%

를 인정 산업합

7. 양수도

- 일시 및 영구 양수도는 관장단체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음
- 일시양수도의 경우에는 양도업체가 양도물량을 소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

8. 사후관리

- 배정받은 물량은 '96.10.31까지 전량 추천받아야 하며 미추천량은 환수하여 즉시 배정하되 경합시에는 재배정시점 전일까지의 업체별 규제품목 수출물량 비율로 배정함. 단, 추천 및 배정물량 미소진분에 대하여는 해당량의 100%를 차년도 기본물량 배정시 별칙 공제함
- 우회수출 등 불공정수출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량의 200%를 환수 조치함
- '96.10.1이후에는 '97년도 수출통관 조건으로 업체별 배정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추천할 수 있음

9. 조상사용

- 배정받은 물량을 전량 추천받은 업체는 금년도 배정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연도내에 수출추천 및 선적을 할 수 있음
- 조상사용하여 선적한 물량은 다음해에 해당업체의 배정량에서 기소진한 것으로 처리함.

10. 행정사항

- EU를 제외한 지역의 수출실적 산정은 한국무역협회전산자료(KOTIS)를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출면장상의 수출실적으로 함
- 본 요령 시행을 위해 수출질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관장단체는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규제지역 수출동향, 규제량의 수출추천 및 소진

진흥회게시판

량등 집행현황을 통상산업부에 보고하여야 함

'96년도 대EU 전자렌지 수출자유규제 운영 요령 안내

1. 규제품목 : HS 8516.50중 전자렌지(KITS제품 포함)
2. 규제기간 : '96.1.1~'96.12.31
3. 규제지역 : EU
4. 관장단체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5. 규제물량 : 추후통보('96년도 한·EU업체간 규제물량 합의시까지 '95년도 규제량 수준에서 잠정 운영)
6. 물량배정
 - 가. 기본배정
 - 배정물량 : 규제물량의 80%
 - 배정방법 : '95년도 기본물량(완제품)의 수출실적(금액기준)비에 따라 안분배정
 - 나. 개방배정
 - 배정물량 : 규제물량의 20%
 - 배정시기 : 규제물량 확정후
 - 배정방법 : 경합시에는 '95년도 규제품목 및 관련 KITS의 수출금액 점유비율로 배정하되 비경합시에는 신청량 전량을 배정하고, 수출금액의 산정 방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완제품 : EU 및 대미수출을 제외한 여타지역에서의 수출실적(금액기준)
 - KITS : 대미 수출실적을 제외한 EU 및 여타지역에서의 수출실적(금액기준)
 - 실적우대 :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요령"에 의거 발급된 업체의 수출실적 및 대일수출 실적은 실적의 200% 인정
7. 양수도
 - 일시 및 영구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장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일시양수도의 경우에는 양도업체가 양도물량을 소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
8. 사후관리
 - 배정받은 물량은 '96.9.30까지 전량을 추천받아야 하며 미추천량(서면제출 수출계획량 제외)은 환수하여 즉시 재배정하되, 경합시는 재배정시점 전일까지의 '96년도 업체별 EU 규제품목 수출추천물량(KITS포함) 비율로 배정함.
단, 추천물량(재배정물량, 서면제출 수출계획량 포함)의 미소진분에 대하여는 해당량의 100%를 차년도 기본물량 배정시 벌칙 공제함
 - 우회수출 등 불공정수출행위가 확인된 경우와 우회수출 관련 확인의 필요한 인정되어 관장단체에서 참여업체의 우회수출 예상지역에서의 수출관련서류 증빙자료 요청시 1개월 이내에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분에 해당하는 물량의 200%를 환수조치
 - 물량배정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본지사간의 가격조작이 있을 경우 동건의 금액 및 수량에 대하여 200%를 벌칙 공제함
9. 조기추천
 - '96.10.1이후에는 '97년도 수출통관 조건으로 금년도 배정물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추천할 수 있음
10. 행정사항
 - 관장단체는 '95년도 참여업체별 수출면장을 확인후 '96.1월중 업체별 기본물량 잠정배정을 실시하고 추후 규제량 확정시 확정물량을 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 업체별 물량배정 기준의 수출실적 산정은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FOB)으로 함.
단, EU를 제외한 지역의 수출실적 산정은

진흥회게시판

한국무역협회 전산자료(KOTIS)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으로 함.

- 관장단체는 우회수출 등 불공정수출행위 방지를 위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본 요령 시행을 위해 수출질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관장단체는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수출동향, 규제량의 수출추천 및 소진량 등 집행현황을 통상산업부에 보고하여야 함.

* '96년도 수출면장이 없는 경우 '95년도 수출면장 첨부

- 4. 고시신청서 작성방법
 - 따로 붙인 작성요령대로 하도 평균환급액 사출은 \$10당임
- 5. 기타 참고사항
 - 적용예정 : '96. 4. 1이후 개산환급 신청분 부터 적용 예정
 - 의문사항 문의처
관세청 민원실 ☎(02)512-3100
관세청 환급과 ☎(02)512-2303

개산환급을 적용신청 안내

1. 제도의 개요
 - 당해업체의 품목별 최근 1년간의 평균환급액을 개산환급금으로 하는 개산환급율표 작성고시(업체신청→관세청장 작성 고시)
 -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개산환급율표에 계기된 관세 등 환급금을 개산액으로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정산시 수출면장상에 선(기)적 사실 등 기재 확인)
 - * 정산기간 : 6월(수출물품을 직수입원재료로만 제조·가공하여 수입면장, 수입면장 분할증명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3월)
2. 신청접수
 - 신청대상 : '95년도 개별환급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
 - 접수기간 : 96.1.3~1.31
 - 접수처 : 관세청 민원실(우편접수 가능 : 우135-702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3. 구비서류
 - 개산환급을 고시신청서(제11-1호 서식)(갑)(을)(병) 각 1부
 - * 신청서식은 관세청 민원실 및 세관에 비치
 - 신청 수출물품(HS 10단위)별 대표적인 '96년도 수출면장(사본) 각 1매

중국 복건성 복청시 원흥공업단지 안내

중국 남해안에 위치한 복건성은 외국투자가 쇄도하는 인기 있는 곳입니다. Singapore Pacific Management Services Pte Ltd.가 관리하고 있는 50평방킬로미터(15,000,000평)의 종합공업단지인 원흥공업단지(Yuan Hong Industrial Park)는 복건성 동해안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흥공업단지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중국최대의 100% 외국 기업 소유의 공업단지 프로젝트로서, 경제기술개발특구와 동등한 특별우대 혜택을 부여 받았습니다.

상수도, 전력, 통신시설 등 양질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115MW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으며, 1996년 말경 가동될 예정입니다. 원흥공업단지의 중요한 수송망은 13km에 달하는 Hai Cheng 도로이며, 1997년 초에 완공 예정인 복주-장랴크 신국제공항으로 연결됩니다.

원흥공업단지는 표준공장을 매매 또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구획정리된 대지를 매입하여 자가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공구 6층 근로자 기숙사가 완공되었습니다.

Singapore Pacific Management Services Pet Ltd.는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특급서

